

2026년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 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고(2차) -

대학 주도 지산학연 협력 R&BD를 위해 RISE사업단 공동연구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대학 및 기업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6년 8월 10일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장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충청북도 전략산업 분야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으로 지역 산업 고도화 및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기업의 기술 사업화,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 촉진

□ 수행기간 : 2026. 9. 7. ~ 2026. 12. 31.

※ 상기 수행기간은 세부 추진일정에 따라 일부 조정 · 변경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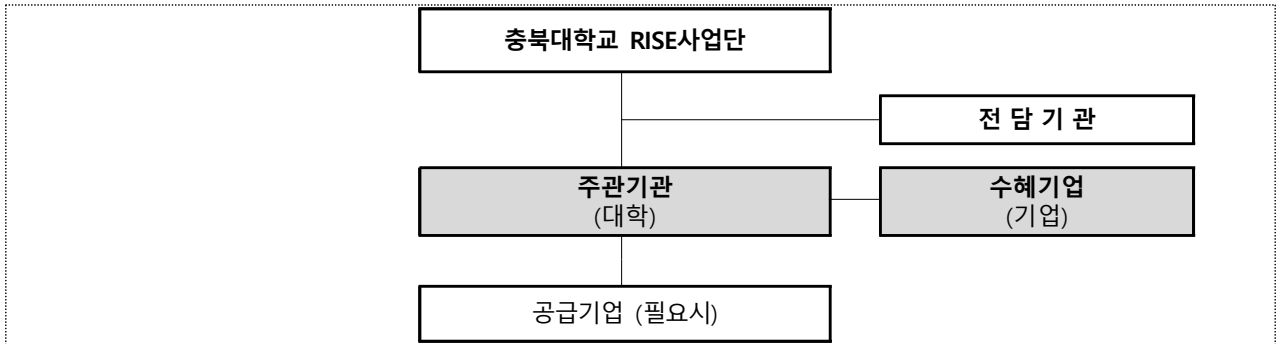
□ 사업내용

- 충청북도 지역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분야의 창의적 아이디어 또는 기술 기반의 사업화 및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 지원

□ 사업수행체계 :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 필수

- 주관기관 : 지원대상 대학만 가능
- 대학 : 책임자는 전임교원만 가능
- 수혜기업 : 반드시 충청북도 소재지 기업으로 제한 (비영리기관 참여 불가)
- 공급기업 : 충청북도 소재지 제한 해당없음 (시제품제작에 필요한 외주, 가공, 용역 기업)

< 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시제품제작지원 기관 수행 체계 >



2 지원 상세내용

□ 지원대상

- 대 학 :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의 전임교원
 - ※ 대학별 지원대상 학과(부): 제한 없음
- 기 업 : 충북지역 소재 반도체 산업 분야 기업
 - ※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 (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

□ 지원범위

- 시제품제작 : 제품 양산 가능성과 제조품질 확인을 위해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할 수 있는 시제품제작 지원

지원항목	내용
재료비	○ 시제품 제작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원자재, 소모성 부품 구매 비용 - 시약·재료 구입비 및 관련 부대 비용
시험분석료	○ 시제품의 성능 검증을 위한 공인시험기관 의뢰 비용
시작품제작경비 (외주 가공용역비)	○ 자체 장비나 인력으로 해결할 수 없어 외부 전문 기업에 위탁하는 디자인, 설계(CAD), 3D 프린팅, 금형 제작, PCB 기판 제작, S/W 개발 등의 비용

- ☐ **지원 산업분야 :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설계/전공정, 후공정, 소재/소자, 평가/분석 관련 분야**

산업분야	정의
설계/전공정	반도체 소재, 설계, 전공정 연구 수행 및 차세대 AI 반도체 구현 핵심 기술
후공정	첨단 패키징 기술 연구, 신뢰성 향상 등 후공정 최적화 기술
소재/소자	지능형반도체 및 응용분야 소재·소자 테스트 등 반도체 실증 기반 기술
평가/분석	반도체 제조 장비 및 공정개선, 미세구조 분석 등 평가/분석 기술

- ☐ **지원규모 : 총 30백만원**

- 충북대학교 20백만원, 청주대학교 10백만원
- ※ 단, 예산상황에 따라 금액이 변동될 수 있음

- ☐ **지원상세규모**

- 각 주관기관별 시제품제작지원 과제 수 및 건당 지원금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규모 >

2차년도 시제품제작지원 규모				
대학	과제 수(건)	건당 지원금 (백만원)	지원금 총액 (백만원)	기간
충북대학교	2	10	20	26년 9월 ~ 26년 12월
청주대학교	1	10	10	

※ 대학별 시제품제작지원 성과지표 목표는 별첨 참조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 **신청자격**

- 대학(공통) : 충북대학교, 청주대학교
- 기업 : 충청북도 소재 기업

- ☐ **신청 및 수행제한 처리기준**

- (참여제한) 수혜기업, 사업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신청제한) 전임교원을 사업책임자로 하여 1인당 1기업 컨소시엄 사업 수행을 원칙으로 함
 - (대 학) 전임교원 1인당 공동연구센터별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에 한해 1건까지 지원가능하며, 전체 공동연구센터 기준으로는 최대 2건까지 지원가능(당해연도 기준)
 - (수혜기업) 기업당 공동연구센터별 시제품제작지원 사업에 한해 1건까지 지원가능하며, 전체 공동연구센터 기준으로는 최대 2건까지 지원가능(당해연도 기준)
- ※ 공동연구센터 : ①첨단바이오, ②차세대 이차전지, ③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④인공지능(AI)·모빌리티, ⑤첨단로봇/제조, ⑥푸드테크 이노베이션, ⑦AI첨단제조, ⑧AX기업혁신
- (서류미비) 신청과제가 접수기간 내 신청 필수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의무불이행) 수혜기업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환수금·제재부과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 기간 내에 기술이전 미완료 시, 해당 과제 대학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참여 1년 제한. 단, 참여기업은 기술이전 완료 시까지 과제 참여 제한
- (중복성검토) 산학공동기술개발과제 참여기업은 과제와 유사 내용으로 참여 불가하며, 타 대학/기관의 시제품제작지원사업의 중복 지원 불가
- (사전제외) 접수마감일 현재 수혜기업, 사업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사전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자본잠식 여부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4.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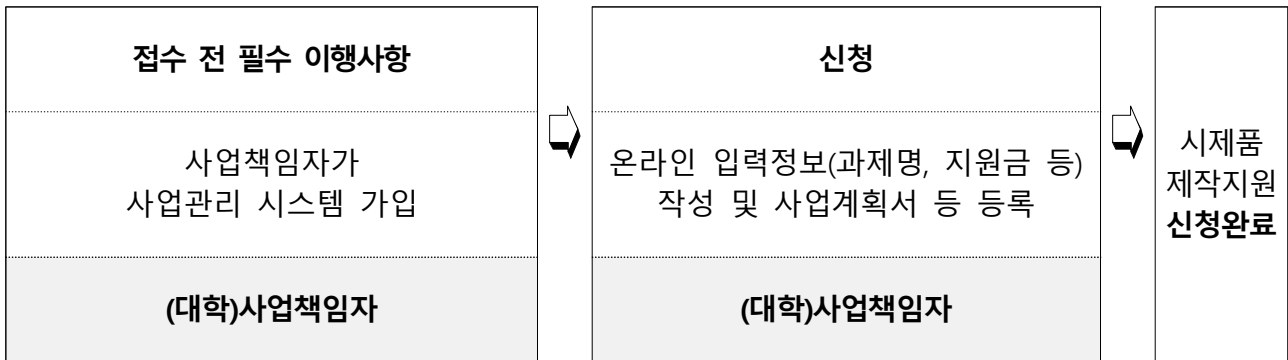
○ 행정사항

-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음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관리 시스템(<https://pms.riia.or.kr>)에 사업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 입력정보 작성 및 신청서 등 제출
- 과제 접수 절차: 사업 관리시스템 접속 → 사업책임자 로그인 → 공고내역 → 공고명 클릭 → 접수신청 → 과제명 및 지원금 입력, 접수파일 업로드 → 제출하기



□ 제출 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주관기관이 취합하여 시스템에 일괄 제출

구분	제출서류	서식	제출부수
대학	① 사업계획서	[붙임 1]	스캔 사본 1부
	②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붙임 2]	
기업	③ 수혜기업 참여확약서	[붙임 3]	
	④ 수혜기업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붙임 4]	
	⑤ 사업자등록증	-	
	⑥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⑦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⑧ 용역 공급기업 견적서(해당 시)*	-	

※ 공급기업은 사업 선정 후 변경 가능

5 신청기간 및 유의사항

□ 신청기간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6. 8. 10.(월) ~ 8. 31.(월) 17:00까지
- ※ 접수 마감일 17:00 이후 접수 불가

□ 유의사항

- 신청마감일 이후 제출서류 미비,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평가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사업비 등 조정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단, 참여제한의 경우 접수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선정 후 주요사항(사업책임자 등) 변경을 원칙적으로 금지함
- 과제 수행 시, 달성실적을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사업수행 종료일 까지 제출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함
- 필요시 추가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 불가

6 평가 절차 및 기준

□ 평가 절차

추진내용	주요내용	추진주체	일정
사업공고	시제품제작지원 사업공고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26. 8. 10.(월) ~'26. 8. 31.(월)
사전검토	참여제한 등 사전검토	전담기관	'26. 9. 1.(화) ~'26. 9. 3.(목)
서면평가 (비대면)	신청과제 평가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26. 9. 4.(금)
평가결과 통보	평가결과 신청기관 통보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26. 9. 7.(월)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간 이내 (1회에 한함)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전담기관)	'26. 9. 7.(월) ~'26. 9. 16.(수)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서류,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면평가)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전담기관의 선정평가 운영을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 결정
- (협약체결) 평가결과에 따른 수정계획서 검토 완료 이후, 시제품 제작 계획 및 지원금액 등에 대한 협약체결

□ 평가 기준

평가항목	평가항목	주요 평가내용
사업계획 및 내용 (40점)	지원의 필요성 (10점)	○ 시제품 제작 필요성 및 지원계획 수립의 타당성 ○ 과거 유사 지원사업 수행 이력 및 활용의 적절성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30점)	○ 목표의 구체성 및 도전성, 우수 사업화 성과 창출 가능성 ○ 사업 추진 내용 및 방법의 충실성, 추진전략의 적절성 ○ 사업비 편성 및 산출 근거의 합리성
추진역량 (30점)	사업책임자 역량의 적정성 (10점)	○ 사업책임자(책임교수) 역량 및 보유기술 현황 ○ 지원사업 관련 연구수행 이력 및 성과 적정성
	수혜기업 역량의 적정성 (10점)	○ 수혜기업 역량 및 보유기술 현황 ○ 사업화 관련 역량 및 자원 활용 계획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10점)	○ 수혜기업의 지원 제품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 지원 제품의 국내외 시장현황 및 시장 확보 계획의 적절성
기대효과 (30점)	사업화 가능성 (20점)	○ 사업화 전략의 우수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과거 사업화 및 기술이전 실적 적정성
	지역 산업 및 경제 파급 효과 (10점)	○ 신규 시장 창출 등 지역 산업 활성화 기여 가능성 ○ 지역 내 직·간접적인 신규고용 창출 효과, 수출 등 기타 지역 경제 기여 가능성

- (선정기준)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대상” 으로 하며, 종합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 로 분류하나,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7 관련 규정 및 지침

☐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규정을 따름

구분	관련 규정
관련 규정	○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운영규정
기타	○ RISE 사업비 집행 및 관리 지침 ○ RISE 공동연구센터 평가관리지침

8 문의처

구분	담당부서	연락처	이메일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지산학연협력부	043-249-1279	hsi0788@cbnu.ac.kr
청주대학교 RISE사업단	RISE사업단	010-8*10-3*1*	dn330@cju.ac.kr

[별첨1]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충북대학교)

☐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필수성과

- 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만 인정

성과	인정기준	
기술이전	당해연도 협약 사업비의 30% 이상	
	인정요건	*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충북지역 한정, 기술이전료 입금 완료)만 인정

[별첨2]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청주대학교)

☐ 시제품제작지원사업 필수성과

- 충북 지능형 시스템 반도체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만 인정

성과	인정기준	
기술이전	당해연도 협약 사업비의 10% 이상	
	인정요건	* 수행기간 내 달성성과(충북지역 한정, 기술이전료 입금 완료)만 인정